

반영하여 1백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선불요금제 가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3UK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기존사업자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43.22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낮은 보급률에 비해 이용자들은 3G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참고자료:

[1]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October 2004 Quarterly Update, 2004. 10.

EU 주파수 거래제 도입 추진동향

통신방송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승훈
(T. 570-4491, sky@kisd.re.kr)

1. 서 론

무선통신의 성장으로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전파산업이 각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파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주파수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신규 주파수 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기존의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EU는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지침에서 회원국들은 주파수 면허권자가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EU는 최근에 주파수 거래제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¹⁾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별적으로 주파수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단일시장을 고려한 주파수 거래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회원국의 규제기관, 주파수 이용자들의 주파수 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유럽의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03년 9월에 EC(European Commission)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전문 컨설팅 기관(Analysys, DotEcon, Hogan & Hartson)에 의뢰하였으며, 2004년 5월에 "Study on conditions and options for introducing secondary trading of radio spectrum in the European Community"의 연구결과를 발표함

2. 본 론

일반적으로 주파수 거래(spectrum trading)는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주파수 이용자간에 주파수 이용권(usage rights)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주파수 이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다른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파수 거래는 기존의 용도 내에서 거래와 용도의 변경(change of use)을 포함하는 거래로 구분될 수 있다.

주파수 거래제 도입에 따른 편익(benefit)으로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주파수 관리의 투명성 및 유연성 증대, 기술혁신 및 경쟁 촉진, 주파수 가격산정(pricing)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있으며, 도입에 따른 비용(cost) 요소로는 법률적 보완, 국제적 조율 및 조정 필요, 간섭 관리, 주파수 매집 등이 있다. 주파수 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른 편익²⁾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주파수 거래제(trading)와 주파수 이용권 관련 서비스 및 기술적 제한의 완화(liberalization)가 함께 도입될 경우, 잠재적 편익(benefit)이 확대되고, 이러한 편익 중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³⁾

현재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주파수 거래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파수 거래에 관한 잠재적 편익과 우려에 대한 다른 인식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 유럽의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 추진현황

구 분	국 가	비 고
주파수 거래제 도입 추진 고려	영국, 스페인	2004년 내에 세부규정 마련 예정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도입 추진 시작 단계
주파수 거래제 도입 계획 미정	프랑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법적으로는 거래가 가능함

자료: David Rojo, "Secondary spectrum trading. Opportunities and Difficulties in EU", ITS 15th Biennial Conference, 2004. 9

2) 2002년 7월 영국의 RA는 주파수 거래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20년간 1억 3,800만 파운드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3) Richard Marsden, "Spectrum trading and the role of innovation", FCS/Eversheds Spectrum Forum, 2004. 7

프랑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은 주파수 거래제와 관련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Ofcom은 주파수 거래 및 용도 변경을 포함한 자문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등은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pre-approval), 사례별 고려사항 등의 서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주파수 거래제 도입을 위한 시작단계(first steps)에 있다.

2004년 5월에 발표된 EU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파수 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 규제 이슈(regulatory issues)와 회원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대역에서만 주파수 거래 허용 여부로서, 오스트리아는 이동통신(mobile bands) 대역에서만 허용할 예정이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주파수 경매 및 비교심사 등을 통해 부여된 대역에만 허용할 예정이며, 영국의 경우는 이용권을 8개로 구분하고 용도 완화와 더불어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허용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모든 대역에 허용할 것인지 일부 대역에 허용할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 주파수 거래에 앞서 승인(approval) 필요 여부로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거래에 앞서 규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EU 규제체계에서는 규제기관에 신고(notification)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례별(case-by-case) 접근 방식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거래시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주파수 거래를 사례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거래가 발생시 규제기관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규제기관에서는 주파수 거래가 활발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주파수 거래의 승인은 경쟁 및 간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기준(criteria)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허용되는 거래 유형(type of trade)으로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주파수 이용의 완화(용도 변경, 분할 및 결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분할 및 결합을 허용할 예정이며,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주파수 분배표 내에서만 용도의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우는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 국가들은 주파수 거래제도의 도입 추진현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는 주파수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른 국가보다 빨리 준

비하고 있으며, 2004년 내에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도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아직 도입 계획은 세우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다.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적용 주파수 대역, 사전 승인, 거래 유형 등의 주요 규제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에서 주파수 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파수 거래제도의 잠재적인 편익과 비용에 대한 국가별 인식의 차이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각국의 주파수 이용 및 규제환경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의 전파 이용 및 규제환경이 다르지만,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거래제 및 이용 제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국의 추진현황을 고려할 경우, 단일시장을 고려한 주파수 거래제도의 도입에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기관⁴⁾에서는 1990년대까지는 이동통신 기술 분야에서 유럽이 미국 및 아시아를 선도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 분야(특히, 무선 광대역 기술분야)에서 유럽이 미국과 아시아에 뒤지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주파수 거래 및 용도 완화를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기술의 수용자가 아닌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Analysys, DotEcon, Hogan & Hartson, "Study on conditions and options for introducing secondary trading of radio spectrum in the European Community", 2004. 5
- [2] Richard Marsden, "Spectrum trading and the role of innovation", FCS/Eversheds Spectrum Forum, 2004. 7
- [3] David Rojo, "Secondary spectrum trading. Opportunities and Difficulties in EU", ITS 15th Biennial Conference, 2004. 9

4) EU의 주파수 거래 관련 연구에 참여한 DotEcon의 Richard Marsden은 "Spectrum trading and the role of innovation"에서 기술혁신을 위해서 EU 차원에서 주파수 거래 및 용도 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기함